

2020년 공무원 근로자 임금표

1. 공무원 근로자 직종별 월임금액

구 분	행정실무원 (사무관리, 연구지원, 임업경영체조사, 전산관리, 사서, 항공기정비보조)	조리원, 시설관리원 (청사시설, 양묘장, 산림수련관, 자연휴양림 등)	중장비운전원
1호봉	1,795,400	1,795,400	1,795,400
2호봉	1,801,600	1,800,400	1,822,900
3호봉	1,809,100	1,806,700	1,851,700
4호봉	1,816,600	1,812,900	1,880,500
5호봉	1,824,100	1,819,200	1,909,000
6호봉	1,831,600	1,825,500	1,994,400
7호봉	1,839,100	1,831,700	2,081,700
8호봉	1,846,600	1,838,000	2,166,000
9호봉	1,854,200	1,844,300	2,249,300
10호봉	1,861,800	1,850,600	2,328,500
11호봉	1,913,200	1,856,800	2,405,600
12호봉	1,963,500	1,863,800	2,467,200
13호봉	2,011,800	1,910,100	2,524,800
14호봉	2,057,100	1,954,300	2,579,300
15호봉	2,102,300	1,996,400	2,632,800
16호봉	2,139,300	2,031,400	2,683,100
17호봉	2,174,300	2,063,200	2,729,400
18호봉	2,208,200	2,097,200	2,774,600
19호봉	2,242,100	2,129,000	2,816,800
20호봉	2,274,000	2,159,900	2,830,100
21호봉	2,285,300	2,170,200	2,843,500
22호봉	2,315,100	2,198,900	2,876,400
23호봉	2,341,800	2,222,600	2,906,200
24호봉	2,366,500	2,247,300	2,935,000
25호봉	2,391,200	2,269,900	2,962,700
26호봉	2,411,700	2,290,400	2,986,400
27호봉	2,429,200	2,305,900	3,006,900
28호봉	2,445,700	2,323,300	3,025,500
29호봉	2,461,100	2,336,700	3,041,900
30호봉	2,475,500	2,349,000	3,058,300

가. 자격증 수당 인정 기준(해당자에 자격수당 추가지급)

-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또는 면허)를 소지하고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 * 전산관리-전산관련 산업기사 이상, 사서원-정사서 또는 준사서, 항공기정비보조-항공기정비관련 기능사 이상 또는 정비사 면허, 조리원-조리기능사 이상, 시설관리원은 해당업무(농기계, 중장비, 전기, 일반농업, 산림, 건축, 토목 등 기능사 이상, 문화재수리기술자) 관련 자격증
 - ※ 자격증 수당은 관련 자격증 제출일의 다음 월부터 적용하며, 소급적용하지 않음
- 상시적으로 업무량이 많거나 노동강도가 높은 경우 또는 업무난이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이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나. 임금표 적용의 예외

- ① 특수직무원(인증심사원, 영상홍보원, 전기심사원 등), 통번역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등
- ② 연구기관에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공무원 근로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③ 관계규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를 보유·운영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조리원 중, 영양사 자격을 소지하고, 그 업무를 겸하는 경우. 다만, 공무원 근로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월 임금의 140%를 상한액으로 정함

2. 기간제근로자의 월임금액

가. 공무원 근로자 월임금액의 해당 직종 또는 유사직종의 1호봉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적용예외 : 해당 직종의 표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보다 업무량, 업무난이도, 자격, 경력 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부서의 장이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음

3. 초과근로(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지급단가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지급

4. 맞춤형 복지포인트

구 분	공무원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지급대상	재직 중인 근로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지급포인트	기본포인트(40만원) + 근속포인트(근속 1년당 1만원) * 근속포인트는 최고 30년까지 반영	기본포인트(40만원)

5. 가족수당

가. 지급대상 : 재직 중인 공무원 근로자

나. 지급근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다. 지급액 : 배우자 월 4만원, 첫째자녀 월 2만원, 둘째자녀 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0만원, 그 외 부양가족 월 2만원

※ 가족수당은 배우자를 포함하여 최대 4명까지 지급, 자녀에 대해서는 4명이 초과되더라도 가족수당 지급

6. 명절휴가비

구 분	공무원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지급대상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지급액	(월임금액 66%의 60%)씩 2회	40만원씩 2회
지급일	설날 및 추석날이 속한 달의 임금지급일 * 명절 전달에 지급할 수 있음	

7. 정액급식비 : 월별 140,000원

8. 봉급조정 수당 : 기존 조리원(가급)과 시설관리원(가급) 중 아래 호봉에 대한 임금 보전을 위하여 조정수당을 별도로 가산하여 지급

호 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금액(천원)	65.6	109.0	112.0	115.1	119.3	122.3	127.5	128.5	131.6	133.6	135.7
호 봉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금액(천원)	136.8	141.8	141.8	144.9	146.0	148.0	147.0	150.1	152.2	-	-

9. 공무원 근로자 호봉획정 기준

- 가. 최초 고용부터 공무원 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부터 지급
- 나.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원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연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는 전환된 다음 월부터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호봉을 책정하되 최대 3호봉으로 책정함 단, 1일자 전환일 경우 당월 1일자에 최대 3호봉 책정함.